

의안번호	제462호
의결 연월일	2023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
관한 조례안

발의자	김호경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11월 16일

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

(김호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6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11월 16일
발의자 : 김호경, 이동우, 김종필,
박지현, 박진희, 변종오,
유재목

1. 제안이유

충청북도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,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정원문화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정원도시의 조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정원문화의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바.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사.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부터 제14조)
- 아. 정원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5조, 안 제16조)

3. 조례안 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붙임

나. 비용 추계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관련 협의 :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산림녹지과

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,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원“이란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.
2. “정원문화“란 정원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소통·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3. “정원문화산업“이란 정원용 식물,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·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, 조경·화훼 관련 산업, 정원문화 관련 교육, 국제교류사업,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.
4. “시민정원사“란 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·관리 및 보전·전시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5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.
5. “정원박람회“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내에서 정원문화 확산

및 정원문화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정원문화의 육성 등) ① 도지사는 도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,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·개발·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정원도시의 조성) ① 도지사는 생활권 내에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정원, 실내외정원, 지능형 정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,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이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정원문화 기반 마련 지원) 도지사는 모든 도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, 도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7조(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) 도지사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·진흥 및 정원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·수집·보급 및 관리
2.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
3. 정원 및 정원문화산업의 조성·관리·전시

4. 유희부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
5. 정원과 정원창업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
6. 국내외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
7. 정원 및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자연학습, 행사,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
8. 정원 및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간행물 발간
9. 소식지,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
10. 정원 및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
11. 정원문화 캠페인의 추진
12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민간정원의 개방)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의6에 따라 충청북도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·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도민참여의 원칙)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민들의 참여는 지역 정원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지역환경 개선과 주민간 교류 활성화 등의 공동체 발전 및 정서적 치유를 위한 활동에 부합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정원문화의 확산 지원) ① 도지사는 도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생활권 중심으로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.

1.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

2. 도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

3.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도민참여 활성화

4.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

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·법인·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1조(시민정원사의 양성)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, 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민간 교육과정의 지원)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시민정원사의 활용) 도지사는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활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)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정원사업(이하 “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 주민대상 정원관련 교육 및 컨설팅

2. 정원 관련 도서, 장비 및 용품 대여

3.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·보존 및 전시

4.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의 전문성·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사업과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정원박람회 개최)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,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16조(정원박람회의 평가) ① 도지사는 정원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원박람회 시책, 지원체계 및 개최성과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·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(자체평가)를 병행할 수 있다.

제17조(포상) 도지사는 정원문화 진흥·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【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】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1. 20., 2016. 12. 2., 2019. 1. 15., 2020. 12. 22., 2021. 4. 13.>

1. (생략)

1의2. “정원”이란 식물, 토석, 시설물(조형물을 포함한다) 등을 전시·배치하거나 재배·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(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,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자연공원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.

2. ~ 7. (생략)

제4조(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) ① (생략)

② 정원은 조성·운영 주체,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국가정원: 국가가 조성·운영하는 정원
2. 지방정원: 지방자치단체가 조성·운영하는 정원
3. 민간정원: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·운영하는 정원
4. 공동체정원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, 마을·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(이하 “공동체”라 한다)이 공동으로 조성·운영하는 정원
5. 생활정원: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·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·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

6. 주제정원

가. 교육정원: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

나. 치유정원: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

다. 실습정원: 정원 설계,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

라. 모델정원: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

마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

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20. 12. 22.]

제18조의13(박람회 등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5. 1. 20.]

제18조의15(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) ①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(이하 “지정표시”라 한다)를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6. 12. 2.]

제18조의17(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)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.
<개정 2015. 1. 20.>

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충청북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정원 내 식물의 보존·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

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8조(민간정원의 개방)
 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·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으로 함
- 추계기간(5년간)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물가상승,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
- 조례안 제8조(민간정원의 개방)에 의거 민간정원 내 식물의 보존·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비용 추계

나. 추계 결과 : 200,000천원

- 연 사업당 최대 40,000천원 소요 예상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, 시군비, 자부담(도 24%, 시군 56%, 자담 20%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